전문대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사업 소개 요약

동남보건대학교 일학습병행공동훈련센터

❑ 전문대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이란 ?

졸업학년 전문대학생을 학습근로자를 선발하여 화학 분야(제약·화장품·환경 등)의 기업에서 1년간 재직하며, 주중에는 기업에서 주말에는 대학에서 각 기업 직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병행하는 일터 중심의 국고지원 교육훈련 제도

❑ 사업의 장점

- **(비용절감)** 훈련비, 훈련지원금, 각종수당 등 **다양한 국고 지원으로 인건비 절감 (※세부지원 내역 하기 표 참조)**
- **(전공지식)** **식품제약과, 바이오환경보건과 3학년(졸업학년)** 재학생을 채용하므로 타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 대비 **전공 소양 ↑**
- **(훈련기간)** 장기운영 사업이 아닌 **1년 사업**으로 기업과 학습근로자의 **부담 ↓**
- **(맞춤교육)** 국고 지원 기업 맞춤형 교육으로 신입사원 재교육비 절감과 미스매치 해소 → 핵심인재 양성 및 장기근속 유도 가능
- **(훈련지원)** 기업의 훈련과정, 행정운영 등 대학에서 적극 지원 및 컨설팅

❑ 국고 지원 내역

<table>
<tr><th>항목</th><th>금액</th><th>수혜대상</th><th>비고</th></tr>
<tr><td>훈련비</td><td>[학습근로자 1인당] 연간 약 385만원</td><td>기업</td><td></td></tr>
<tr><td>훈련장려금</td><td>[학습근로자 1인당] 월 25만원</td><td>기업</td><td></td></tr>
<tr><td>기업현장교사 수당</td><td>[훈련실시 월 지급]
월 33만원부터 차등지급</td><td rowspan="2">현장교사
(교육담당 직원)</td><td>
<table>
<tr><th>근로자</th><th>1인</th><th>2인</th><th>3인</th><th>4인</th><th>5인</th></tr>
<tr><td>수당 (만원)</td><td>33.3</td><td>41.6</td><td>50</td><td>58.3</td><td>66.7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tr><td>기업현장교사 심화 수당</td><td>[심화과정 교육 이수 후]
월 10만원 추가지급</td><td>필수 ×</td></tr>
<tr><td>HRD 담당자 수당</td><td>[훈련실시 월 지급] 월 25만원</td><td>HRD 담당자
(회계/인사)</td><td></td></tr>
<tr><td>훈련과정 프로그램 개발비</td><td>105만원 일시지급(1회 한정)</td><td>현장교사</td><td>개발 참여한 기업 관계자가 수령</td></tr>
<tr><td>외부평가(자격시험) 합격수당</td><td>[훈련 종료 후]
합격인원당 120만원</td><td>기업</td><td>240만원 중 50%씩 각각 학습근로자, 기업 수령</td></tr>
<tr><td colspan="4">[학습근로자 1인 채용 시] 연간 기본 약 1,490만원, 최대 약 1,700만원 수혜 가능
※ 훈련시간 및 심화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/ 채용인원별 기본 지원액 하기 표 참조
<table>
<tr><th>채용인원</th><th>1인</th><th>2인</th><th>3인</th><th>4인</th><th>5인</th><th>6인</th><th>7인</th><th>8인</th><th>9인</th><th>10인</th></tr>
<tr><td>기본 지원액 (만원)</td><td>1,490</td><td>2,274</td><td>3,060</td><td>3,844</td><td>4,630</td><td>5,415</td><td>6,199</td><td>6,984</td><td>7,770</td><td>8,554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/table>

❑ 기업지정 절차

참여신청 (사전컨설팅) ⇒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장 조회 ⇒ 서류·현장심사 ⇒ 학습기업 지정·약정체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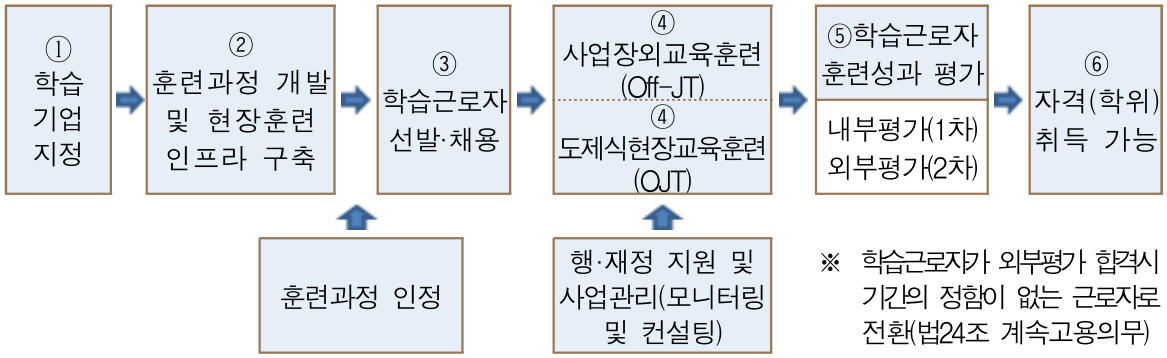
❑ 기업지정 기본요건 [일학습병행법 제13조제2항, 시행령 제8조]

순번	지정요건
1	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기업이 아닐 것
2	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된 내용과 관련된 사업장(공표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으로 한정한다)이 아닐 것
3	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 제24조 제3항에 따른 인정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아닐 것
4	「고용보험법」 제9조 및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일 것
5	학습기업 지정신청일 기준, 상시근로자 수가 20인 이상일 것. 단, 기술력이 높은 기업 등 공단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기업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일 것
6	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산정한 신용등급 중 최하위 두 번째 등급 이상일 것(단, 기업신용등급이 생성된 경우만 해당)
7	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및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함께 실시할 수 있는 시설·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
8	일학습병행 과정과 관련된 기업현장교사·실무 담당자를 각 1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

❑ 기업지정 평가지표 요약 [합산 70점 이상 시 지정(※ 세부지표 추후안내)]

<table>
<tr><th>순번</th><th>중분류</th><th>소분류</th></tr>
<tr><td>1</td><td>사업 이해도 및 참여의지 (40점)</td><td>① 전담자(기업현장교사·HRD담당자) 선발 및 관리 (10점)
② 학습근로자 선발 및 관리 (10점)
③ 기업의 중장기적 HRD 계획·방안 (5점) 우량기업* 만점적용
④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역량 (10점)
※ CEO인터뷰+사업수행계획서로 평가(HRD 또는 인사권자로 인터뷰 대체 가능)
⑤ 유사훈련 실시경험 (5점) 우량기업* 만점적용</td></tr>
<tr><td>2</td><td>기업규모 및 건전성 (30점)</td><td>① 신용등급 (5점)
<table><tr><th>A등급군</th><th>B등급군</th><th>C등급군</th><th>D등급군</th></tr><tr><td>5점</td><td>4점</td><td>3점</td><td>지정제외</td></tr></table>
② 상시근로자 수 (15점)
<table><tr><th>100이상</th><th>50이상-100미만</th><th>20이상-50미만</th><th>20미만</th></tr><tr><td>15</td><td>12</td><td>9</td><td>6</td></tr></table>
③ 장기근속(3년)현황 (10점) 우량기업* 만점적용
<table><tr><th>70%이상</th><th>50%이상 70%미만</th><th>40%이상 50%미만</th><th>30%이상 40%미만</th><th>30%미만</th></tr><tr><td>10</td><td>7</td><td>5</td><td>3</td><td>0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tr><td>3</td><td>인적·물적 인프라 (30점)</td><td>기업현장교사 후보군(10점) 우량기업* 만점적용
<table><tr><th>6명 이상</th><th>5명</th><th>4명</th><th>3명</th><th>2명 이하</th></tr><tr><td>10</td><td>7</td><td>5</td><td>3</td><td>0</td></tr></table>
훈련시설장비(10점) / 안전보건관리 적정성(5점) 우량기업* 만점적용</td></tr>
<tr><td>4</td><td>가점 (4점)</td><td colspan="2">①사회적경제기업*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, ②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선도기업, ③산업통상자원부 외투기업 부문 포상기업, ④산업통상자원부 농공단지 소재 기업, ⑤교육부 산학협력우수인증기업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*우량기업 기준</td><td>1. 상시근로자 50인 이상(HRD-Net 조회기준 또는 지정신청일을 포함하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 수), 신용등급 B이상인 기업 → 두가지 요건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우량기업으로 판단
2. 최근 청년친화강소기업, 월드클래스300기업, Best HRD 선정기업 → 상기 우량기업 판단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우량기업으로 인정. 단, 학습기업 최소요건은 충족하여야 함</td></tr>
</table>

❑ 지정 이후 사업수행 절차



사업에 대한 문의 및 참여 관련 세부사항은 010-7556-7110(박제범 팀장)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관련 자료를 전송드리겠습니다.